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최은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9266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5.

발 의 자 : 최은석・성일종・김상훈
권영진・김기웅・김대식
고동진・안상훈・김태호
이달희・최보윤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법령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체가 공장을 임차하여 창고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한되며, 일정 규모의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그 부대시설의 하나로 창고를 설치할 수 있음.

그런데 최근 산업단지 내 제조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체가 주문량 증대로 기존 창고 공간이 부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빈 공장을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물류비 부담 증가 및 유휴 공장부지 발생 등 비효율이 초래되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입주기업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장 등을 추가로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운영을 효율화하려는 것임(안 제38조의4 신설).

법률 제 호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8조의4(공장등의 임차에 관한 특례) ① 입주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산업시설구역등에서 공장등을 추가로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할 수 있다.

1.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제조시설을 설치·운영 중일 것
2. 해당 입주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보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

② 제1항에 따른 공장등의 임차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38조의4(공장등의 임차에 관한 특례) ① 입주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산업시설구역등에서 공장등을 추가로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할 수 있다. 1.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제조시설을 설치·운영 중일 것 2. 해당 입주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보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공장등의 임차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